
2021년도 신규 스포츠클럽 2차 공모요강

2021. 4. 1. (목)



대한체육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목 차]

1. 공모사업 개요	1
2. 공모 심사 일정(안)	2
3. 공모자격요건	3
4. 스포츠클럽 사업 프로세스	4
5. 스포츠클럽 공모 세부내용	6
5-1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모형 (대도시,중소도시)	5
5-2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 참가자격	6
5-3 스포츠클럽 매칭지원금 확보	7
5-4 시설확보 조건	8
5-5 클럽하우스 공모신청	10
5-6 전문선수반 운영 및 선수육성	11
5-7 스포츠클럽 운영 종목 기준	12
5-8 스포츠클럽 비영리법인 설립	13
5-9 스포츠클럽 운영조직	14
5-10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14
5-11 재정자립 방안 수립	14
5-12 회원 유치 및 관리	15
5-13 스포츠클럽 기금 예산편성 기준 및 사용범위	16
6. 평가방법	17
6-1 심사 및 평가방법	17
6-2 평가개요	17
6-3 서면평가(정량)	18
6-4 서면평가(정성)	19
6-5 발표평가	21
6-6 현장실사	21
6-7 최종선정위원회	22
7. 공모선정 공고	23
붙임1 2021년도 신규 스포츠클럽 2차 공모 제출서류 양식(1~15)	24
붙임2 공모선정 후 대한체육회와 체결할 계약서(안)	53

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 선정 공모 요강

1 공모사업 개요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 **선정개소** : 총 17개소
 - 규모(안) : 대도시형 13, 중소도시형 4개
 - * 공모신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함으로 선정규모는 참고용
- **공고기간** : 2021. 4. 1.(목) ~ 5. 10.(목) * 40일간
- **접수기간** : 2021. 5. 6.(목) ~ 10.(월) * 3일간(공휴일 제외함)
- **제출방법**
 - 대한체육회 공문서로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단 전자문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 유선통화 후 e-mail로 공모 신청문서 송부 가능
 - 제출자료
 - ① 신청서류*를 **10부 출력하여 우편 제출**
 - ② 신청서류* **이동식기억장치(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함께 우편 제출**
 - * 신청자료 25page 참조(발표자료 포함됨) / 휴대용저장장치 파일(양식1~15) 전부
 - ※ 이동식기억장치(USB)는 발표평가 후 요청시 반환가능함
 - 제출기한(=접수기간) : 2021. 5. 6(목)~10.(월)
 - 제출방법 : 코로나상황을 고려하여 제출기한 내에 우편으로 접수(18:00까지)
 - * 당일(20일) 소인분까지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20일 발송하여 21일 도착 인정됨)
 - 제출처 :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주진우 대리(02-2144-8222 /sportsclub@sports.or.kr)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스포츠클럽부

2 공모 심사 일정(안)

□ 주요안내 및 준수 사항

- 해당일정은 신청단체가 공모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용이며, 실제의 공모추진 일정은 신청단체 접수 및 심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신청자의 발표 및 현장실사 대상 및 일정에 대하여는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되오니, 심사에 관한 문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심사 일정(안)

① 공모공고 : 2021.4.1.(목)~5.10.(월) * 40일간 공고

② 서류평가 : 5.13.(목) ~ 18일(금)

④ 발표평가 : 5.25.(화) ~ 26.(수)

(기 제출한 PPT 경영계획과 서류평가 시 요청된 보완사항 발표)

*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에게 별도 공문으로 안내

⑤ 현장실사 : 6.2.(수)~4.(금)

* 권역별로 시행하며,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에게 별도 공문으로 안내함

⑥ 최종선정위원회 : 6.9.(수)

⑦ 최종발표 : 6.11.(금)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공문 안내

※ 해당 일정은 변경가능하며 공모신청자의 참고용임

3 공모자격요건

□ 공모신청 가능 지역 및 스포츠클럽 설립 기준(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원칙

①	인구 3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1개 스포츠클럽
②	인구 30만명 이상~5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최대 2개 스포츠클럽
③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최대 3개 스포츠클럽

ex) 인구 30만 미만인데 기존 1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을 시 공모신청 불가

○ 예외

- 자체시설을 가지고 공모신청하는 교육단체(대학교와 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구에 1개 클럽이 운영하고 있더라도 공모 신청 가능
- 이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의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공문](#)'과 '[기존에 있는 지역 스포츠클럽의 지원확약서](#)' 반드시 제출

□ 공모참가가능 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광역자치단체 신청하여 선정 할 경우 스포츠클럽 법인소재 기초자치단체 지역으로 관리됨

○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 중앙종목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

○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프로구단, 교육단체(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

* 제외대상 : 영리법인x, 주식회사x, 해당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공공스포츠클럽

□ 공모신청시 필수조건(원칙) [세부내용 8~9page 참조]

○ 공공체육시설 확보 : 5년 이상 * 공공체육시설 외 : 10년 이상

○ 매칭지원금 확보 : 기금 총 지원금의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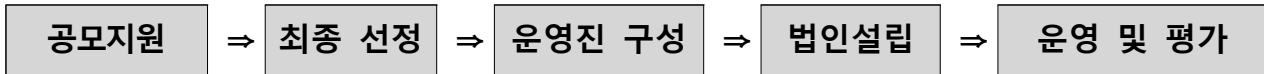
○ 시설의 스포츠클럽의 종목운영 사용시간 : 60% 이상

□ 유의사항

- 금번 신규스포츠클럽 공모에 신청하는 서류내용은 사업 최종 선정 후 **대한체육회와 체결하는 계약서 [붙임2 60page참조] 에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이니 작성에 유의바랍니다.**

4 스포츠클럽 사업 프로세스

□ 사업 프로세스



- 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클럽준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정 후* 1개월 내 클럽 사무국장 및 행정직원 선임 필수(공개채용) * 공모선정 대한체육회 공문일자 기준
- 비영리법인 설립은 공모선정 후 3개월 이내 완료 해야함

연말 평가에 따른 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럽은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2. 신규클럽은 연말 평가를 통해 공모 시 제출한 사항(특히 시설 사용 측면에서) 준수여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3. 연차별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부진클럽으로 선정 후 클럽운영 정상화 전까지 스포츠클럽 사업비 지원 중단 * 선정 후 대한체육회와 신청주체, 매칭지원금 주체,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자간 계약서' 작성을 함.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 지원 중단의 귀책사유가 클럽 및 신청주체에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추진 【붙임2참조】
------------------------	--

□ 공모선정 시 스포츠클럽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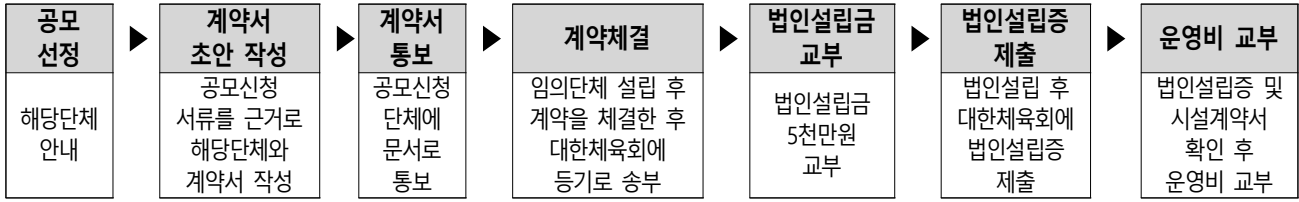
- 신청주체와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 신청주체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님
 - 지역체육회를 법인화 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점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아님

□ 스포츠클럽 5년 이후 운영계획 * 2021년도 사업기준으로 안내 함

- 스포츠클럽 공모선정 후 5년간 운영비가 지원되고 종료되나, 스포츠클럽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계속 운영됨 * 5년간 사업운영시 종료되는 일몰사업이 아님
- 6년차부터 대한체육회의 공모사업에 참여가능
- 6년차부터 인건비 지원(행정인력 2명)가능 * 계획(안) 기금50%, 지방비 50% 매칭

□ 클럽운영비 교부절차 및 연차별 사업비 교부 규모

○ 클럽 운영비 교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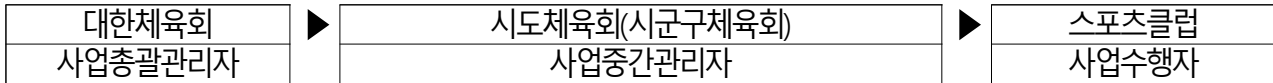
○ 연차별 사업비 교부 규모 * 공모선정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로 6년 지원 가능

- 대도시형 5년간 최대 9억 지원
- 중소도시형 5년간 최대 6억 지원

구분	연차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중소도시형	1.5억	1.5억	1억	1억	1억	6억
대도시형	2.5억	2억	1.5억	1.5억	1.5억	9억

* 사업추진기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국고보조금(기금) 교부절차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의 사업비 운영됨



※ 대한체육회가 공모신청자(지자체, 시군구체육회, 비영리법인, 대학교 등)에게 교부하지 않음



5 스포츠클럽 공모 세부내용

5-1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모형 (대도시 모형, 중소도시 모형)

구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모형 정의	대도시 시군구 지역에서, 600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5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클럽					중소도시 시군구 지역에서, 400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3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규모 클럽				
인구기준	인구 20만 이상					인구 20만 미만				
	*공모신청시 통계청 kosis지표 기준									
종목 수	5종목 * 지역 여건에 따라 3종목 운영 신청 가능 (단 중소도시형과 동일한 금액(5년간 6억) 지원)					3종목				
정회원*수 *유료회원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80명	160명	240명	320명	400명
예산	총 9억원 (최대 5년간 지원)					총 6억원 (최대 5년간 지원)				
지자체 매칭지원금 (기금의 10% 이상)	공통	①대도시형 5년간 총 9천만원 이상 / 중소도시형은 5년간 총 6천만원 이상 ②선정 후 1~2년차부터 스포츠클럽 구성원에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지원								
	지방비	<대상자> 모든 공모 신청주체 해당								
	자체	<대상자> 자체시설을 보유한 프로구단, 교육단체(대학교*,체육중고등학교)가 신청할 경우 가능함 *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법률자문 후 계획 수립								
	교육청	<대상자> 자체시설을 보유한 교육단체(체육중고등학교)가 신청할 경우 가능함								
시설	공공체육시설	5년 이상		① 스포츠클럽 종목운영이 최소 60% 이상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② 1공간 1종목만 운영 * 공간을 분리하여 2종목 이상 운영 불인정						
	공공체육시설 외	10년 이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프로그램(다세대/다수준/다연령 프로그램) · 커뮤니티프로그램(주민, 소외계층 대상 등) · 2년차부터 1종목 전문선수반 운영 									

* 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프로구단,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자체시설 등

※ 선정된 클럽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2회 연속 부실 평가시 지위박탈)

5-2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 참가자격

□ 공모사업 참가방법

- 공모신청 단체는 (원칙) 단독으로 공모사업에 참가해야함.
- 두 단체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본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신청주체는 1단체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주체	상세 내용
자치단체 (시도/시군구)	<p>▶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수 있는 자치단체</p> <p>- 스포츠클럽에게 최소 3~5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p>
체육전문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종목단체 등)	<p>▶ 지역사회 내 체육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p> <p>-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와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지역체육회 및 종목단체</p>
교육단체 (체육중·고등학교) (대학교)	<p>▶ 교육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대학교 및 체육중·고등학교</p> <p>① 체육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단체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학교 사용(수업 및 운동부 사용)시간과 클럽 사용 가능 시간을 반드시 명시</p> <p>② 학교 시설 외 공공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사용 가능</p> <p>③ 교육단체가 보유한 시설제공 시 사용기간 최소 10년 이상 확보 및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명시</p>
프로구단	<p>▶ 프로구단</p> <p>① '지자체 시설 확보' 또는 '자체 시설 소유'의 경우만 인정</p> <p>② 프로구단이 보유한 시설제공 시 사용기간 최소 10년 이상 확보 및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명시</p>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small>*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련 사단,재단법인</small>	<p>▶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련 민간단체</p> <p>① 민간단체가 지자체 시설(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단체 소유 시설을 시설로 확보하여 신청 할 경우 민간단체는 선정된 후 해당 시설을 클럽법인에 기부해야 함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포함)</p> <p>② 민간단체가 자체 시설로 공모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부채가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회계결산자료(회계사 인증 필요) 제출 필수</p> <p>▶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p> <p>① 자체 시설이 없더라도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신청 가능하나, 스포츠클럽 공모선정 후 반드시 해당 스포츠클럽이 시설을 적절 위수탁 할 수 있도록 계약 진행해야 함</p> <p>② 기타 민간단체의 경우 자체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및 임대형태의 시설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본 공모사업 신청 불가</p>

5-3 스포츠클럽 매칭지원금 확보

□ (원칙) 매칭지원금 : 기금지원 금액의 지방비 10% 이상 매칭

- 선정 후 1~2년차부터 5년간 스포츠클럽 구성원들에게 사업자부담금(우선편성) 및 퇴직적립금(우선편성),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
- 대도시형 총 9천만원 이상 / 중소도시형은 총 6천만원 이상

□ (예외) 매칭지원금 : 기금지원 금액의 자체 및 교육청비 10% 이상 매칭

(1) 자체시설로 공모에 신청한 「프로구단」, 「대학교」의 경우에 자체부담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불필요 **단,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매칭**

(2) 자체시설로 공모에 신청한 「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자체부담금, 교육(지원)청 지원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 없음

▲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공문’ 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5년 이후 지자체(학교 등) 지원이 있는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하나, 관리위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시설보조금은 평가 가점에서 제외**

(공문 샘플)

000구

수신: 00체육고등학교장

제목: 2020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관련 의견통보

1. 00체육고등학교-00(2020.00.00)호 관련
2. 2020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관련 우리 학교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의견내용 : 2020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실 인지 및 신청 찬성

000구청장(직인)

※ 2019년 신규스포츠클럽 공모 당시 신청단체 자료 참조

5-4 시설확보 조건

□ 시설확보 및 운영

○ **스포츠클럽이 각 종목별 운영을 위해 전(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확보(최소60%이상)**

- 공모신청한 시설은 **스포츠클럽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야 함**
- 한 공간을 나누어서 2종목 이상 운영은 불가함

○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클럽이 자율적으로 주 6일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종목운영 시설을 확보 필요

○ 클럽의 주요 종목은 주 6일 전일제(Full time) 운영하여 클럽의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활용 수준 향상 필수

○ 스포츠클럽 시설은 클럽이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 (해당시간에 클럽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 선정 취소함**

※ 시설의 기존 이용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사전 상호 합의하여 도출해야함(평가시 확인사항)**

실제 클럽이 운영 가능한 시설만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모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취소함 2. 사업 취소의 귀책사유가 클럽 및 신청주체에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3. 지자체 소유 및 기타 시설 사용 계약 체결 시, 표준협약서【붙임1】를 체결 하여 제출 ex) 스포츠클럽이 설립 전 이므로, 표준협약서 양식에 시설 당사자만 직인을 찍은 후 제출하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스포츠클럽 법인설립 후 제출한 협약서에 직인날인 계약체결
-----------------------------	--

□ 시설관련 표준협약서

○ **공모신청시 시설관련 표준협약서【붙임참조】 필수제출**

○ 표준협약서에는 시설관련 당사자들이 다 포함되어야 함

ex) 시설소유자, 시설위탁자, 스포츠클럽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모두는 직인을 찍어서 제출

(예시) 3자간 계약(지자체-체육회-스포츠클럽)

A다목적체육관의 소유자는 B지방자치단체이고, 현재 C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금번 공모에 C체육회가 A다목적체육관을 가지고 공모신청 시, 시설관련 표준협약서에는 B지방자치단체와 C체육회, D스포츠클럽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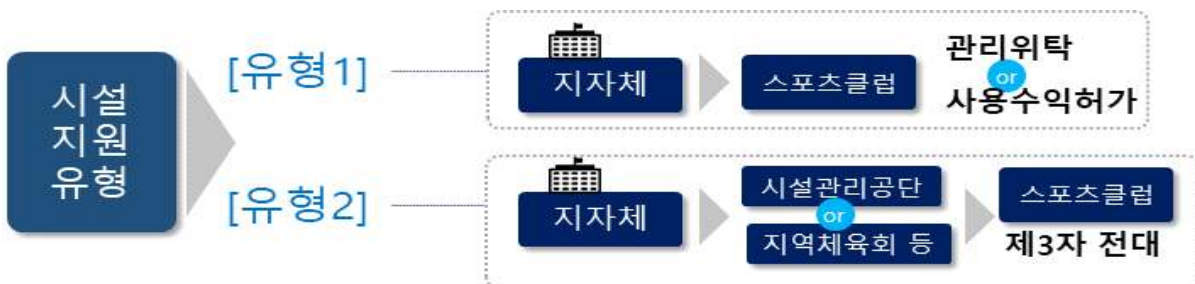
(예시) 4자간 계약(지자체-체육회-비영리법인-스포츠클럽)

A다목적체육관의 소유자는 B지방자치단체이고, 현재 C체육회가 위탁을 받아 D비영리법인에 전대하여, 금번 공모에 D비영리법인이 A다목적체육관을 가지고 공모신청 시, 시설관련 표준협약서에는 B지방자치단체와 C체육회, D비영리법인, E스포츠클럽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어야 함

□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 확보 필수

<p>관리 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체육시설 등에 대해 스포츠클럽이 「관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위탁을 통해 실제 클럽이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개관시간 중 클럽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관리위탁 시 사용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위탁사용 및 관리비, 수입 배분 등) ※ 관리위탁에 따른 시설소유 주체의 추가지원(운영비, 관리지원 등)이 있을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p>사용·수익허가 (무상 또는 유상 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학교 등이 스포츠클럽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하거나 관리위탁자가 스포츠클럽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제3자 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6일' 이상 클럽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관 시간 중 종목별로 최소 60%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함, 한 공간을 분리하여 2종목 이상 운영하는 것은 불인정하며 1공간은 1종목 운영으로 계획수립 필요 * 예) 지자체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가 관리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프로그램운영을 스포츠클럽에 임대 ※ 사용시간 및 공간 비중이 높을수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해당 시설의 관리위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평가 시 가점 부여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사용요금을 지불하나 이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이는 '무상사용'에 해당 ○ 시설 임대 확보는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제출하는 시설은 시설확보 및 사용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된 『시설 협약서』 제출 필수 (협약서는 첨부양식 활용) ○ 시설관련 공모신청 제출 자료 : 25page 양식 5,6,7,8,9

[참고] 지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스포츠클럽 지원 유형



5-5 클럽하우스 공모신청

클럽하우스 설치 및 운영

- 스포츠클럽 시설에는 클럽 회원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클럽하우스 반드시 구축해야함**
- 유동회원이 많고 회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해야 함
- 클럽 회원 교류 장소인 만큼 클럽 사무실과 구분되어 운영
- 클럽하우스에는 클럽회원 교류 및 휴식을 위한 기본 설비 이외에도 클럽 소식을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수
- 별도의 클럽하우스를 구축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존 사무실을 파티션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할 때까지 임시라도 구축해야 함

서귀포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



인천계양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



오산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



수준별 선수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차부터 최소 1개 종목을 반드시 운영해야함 ○ 생활체육 운영 종목 내 엘리트육성 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권장함 ○ 만약 엘리트육성 종목이 생활체육 동시 운영이 아닌 엘리트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형태인 경우 해당 엘리트종목 외 최소 5종목(또는 3종목)의 생활체육 운영 종목을 준비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 중소도시형 신청 경우 신청 종목이 생활체육(축구, 테니스), 엘리트(배드민턴)인 경우 총 종목은 3종목이나 배드민턴이 생활체육 동시 운영이 아닌 만큼 일반종목에 한 종목을 추가해야 신청 가능</p> </div>
-----------------------	---

종목 선정 방안 예시

- ▶ 해당 시도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지 못한 종목
- ▶ 지역 내 학교운동부 해체 종목 흡수(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 ▶ 지역 내 초·중학교 선수반이 있으나 고등학교 팀이 없는 경우, 남학생 팀은 있으나 여학생 팀이 없는 경우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종목
- ▶ 직장운동부 및 프로구단이 있는 종목으로 지역에서 선수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 (종목 선정) 클럽별 올림픽 종목 위주로 1개 종목 이상 육성
- (회원 확보) 클럽의 전문선수 육성은 기본적으로 자체 확보한 청소년 회원 중 발견된 회원을 선발하여 운영
- (1년차) 클럽은 전문선수를 육성할 계획이 있는 종목에서 반드시 다수의 자체 청소년회원 확보, 학교 방과 후 수업 연계 등을 통해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단 지역여건상 본격적으로 선수반(수준별) 육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1년차부터 진행해도 무관함)
- (2년차 이상) 해당 종목에서 재능이 발현된 회원 대상으로 전문선수반 모집 및 선수반 운영 진행, 선수등록 실시 및 엘리트 대회 출전
- 학업과 병행하여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공부하는 학생선수’ 모델 제시)

5-7 스포츠클럽 운영 종목 기준

<p>종목 최소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도시형 : 최소 5종목 운영 * 단 지역시설 등 여건을 고려하여 3종목 운영 가능(5년간 6억원 지원) 2. 중소도시형 : 최소 3종목 운영 3. 종목기준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78종목 기준 (ex_풋살은 축구종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롤러스포츠, 루지, 바둑,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사격,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서핑,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수영, 수중·핀수영,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소프트볼,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자전거, 조정, 족구, 철인3종,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하키, 합기도, 핸드볼, 주짓수, 줄넘기, 카라테, 카바디, 킥복싱, 크라쉬, 오리엔티어링, 요가, 줄다리기, 치어리딩, 특공무술, 테크볼, 파워보트,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최소 1종목은 올림픽 종목으로 구성 필수 5. 지역적으로 근접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종목과 겹치지 않게 운영 								
<p>엘리트 육성종목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엘리트육성 종목 최소 1종목 이상 운영. 단 생활체육 운영 종목 내 엘리트육성 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권장함. 2. 만약 엘리트육성 종목이 생활체육 동시 운영이 아닌 엘리트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형태인 경우 해당 엘리트종목 외 최소 5종목(또는 3종목)의 생활체육 운영 종목을 준비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시 : (중소도시형) 신청 종목이 생활체육(축구, 테니스), 엘리트(배드민턴)인 경우 총 종목은 3종목이나 배드민턴이 생활체육 동시 운영이 아닌 만큼 일반종목에 한 종목을 추가해야 신청 가능</p> </div>								
<p>종목선정</p>	<p>클럽의 종목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최소한 1종목 이상은 클럽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선정필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클럽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0%;">자연환경</td> <td>▶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진행 할 수 있는 종목 (제주도: 승마, 강원도: 스키 등 동계종목, 부산: 해양스포츠 등)</td> </tr> <tr> <td>지역전통</td> <td>▶ 지역 전통적으로 우수선수를 다수 배출하거나, 종목 운영을 위한 특화된 시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경북예천: 양궁, 전북군산: 야구, 충북충주: 조정, 전북순창: 정구)</td> </tr> <tr> <td>비인기종목 활성화</td> <td>▶ 비인기종목으로 지역 및 전국단위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종목 (펜싱, 소프트볼, 육상, 사이클, 럭비 등)</td> </tr> </tbody> </table>	클럽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예시		자연환경	▶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진행 할 수 있는 종목 (제주도: 승마, 강원도: 스키 등 동계종목, 부산: 해양스포츠 등)	지역전통	▶ 지역 전통적으로 우수선수를 다수 배출하거나, 종목 운영을 위한 특화된 시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경북예천: 양궁, 전북군산: 야구, 충북충주: 조정, 전북순창: 정구)	비인기종목 활성화	▶ 비인기종목으로 지역 및 전국단위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종목 (펜싱, 소프트볼, 육상, 사이클, 럭비 등)
클럽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예시									
자연환경	▶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진행 할 수 있는 종목 (제주도: 승마, 강원도: 스키 등 동계종목, 부산: 해양스포츠 등)								
지역전통	▶ 지역 전통적으로 우수선수를 다수 배출하거나, 종목 운영을 위한 특화된 시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경북예천: 양궁, 전북군산: 야구, 충북충주: 조정, 전북순창: 정구)								
비인기종목 활성화	▶ 비인기종목으로 지역 및 전국단위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종목 (펜싱, 소프트볼, 육상, 사이클, 럭비 등)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엘리트육성은 스포츠클럽명으로 대한체육회 팀등록을 하고 해당 팀명으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함. 2. 공모 선정 후 종목변경은 불가하므로 종목신청에 각별히 주의를 요함 * 공모신청 종목으로 1년 이상 운영하고, 1년 이내 변경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종목변경시에는 대한체육회 승인이 필요함 								

5-8 스포츠클럽 비영리법인 설립

□ 비영리법인 설립(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 및 정부지원의 근거 마련
 -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 「비영리법인」으로 클럽을 설립할 경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국고보조금(기금) 중 최대 5천만원 사용 가능(기존 비영리법인 전환 불가함)**
 -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이 가능하여 1년차 지원금 모두를 운영비로 사용 가능(단 출자금의 최저한도는 없으나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합원은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함.)

-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스포츠클럽에 이미 상당한 소속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이해그룹을 보유하고 있어야** 협동조합의 성격을 유지하며 클럽 운영이 가능
- 협동조합은 스포츠클럽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나가는 상황인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보다는 비영리사단법인 형태가 적합

- 이와 같은 두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설립 방안 확정

구분	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주체	발기인(2인 이상)	발기인(5인 이상), 단 조합원이 2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기본재산 (출자금)	약 5천만원(시도별 차등) - 발기인의 기본재산 마련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음.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 가능 - 출자금의 최저 및 최고한도 없음 - 1인이 전체 30% 이상 납입 불가
법정 적립금	적립 비율 등 규제 無	잉여금의 30% (자기자본의 3배까지)
기타	세제 혜택, 기부금단체 지원 등 두 법인 혜택 동일	

- 신청주체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 있으나, 스포츠클럽은 신청주체와 무관한 별도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운영됨

※ 두 법인에 대한 교육은 공모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신규스포츠클럽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세 진행함(공모선정 후 1달 이내 진행예정)

5-9 스포츠클럽 운영조직

- 운영조직 형태는 회원총회, 이사회, 회원 등으로 구성되며, 각 조직의 업무 수행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클럽 운영
- ※ 향후 회원 중심 클럽 운영을 위한 종목별 간담회 및 회원 자치 조직 구성 필수
- **클럽사무국장**은 클럽의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외부연계 확보, 주요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클럽운영인력 관리 등을 실시하는 자리인 만큼, 클럽사업과 지역체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고용
- ※ 채용된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스포츠클럽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전임지도자** ①전문선수반은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②일반강습반은 해당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자로 고용해야 함
- 회원에게 우수한 강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퇴선수 중심으로 지도자를 구성하며 지도자는 최소 해당종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 확보

5-10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 생애주기 프로그램, 뉴스포츠 종목*, 기능 수준별 프로그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남녀노소, 소외계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제공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만 가능
- 유소년·청소년·학교스포츠클럽을 유인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 권장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 권장
- 소외계층 전용 또는 무료 프로그램 진행 권장

5-11 재정자립 방안수립

- 재정 확대 및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 경주
 - 회원 자원봉사자(지도, 행정, 일반 등) 확보 권장
- 체육지도자와 시설을 활용한 수익 창출 도모
 - 위탁시설 재임대, 지도자 파견수업 진행, 각종 대회 및 리그 운영
- 공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재정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수익활동 추진
 - 전문 선수육성반, 유니폼 및 용품 판매, 기업 기부 및 스폰서 확보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비를 내는 회원 확대
 - 스포츠클럽 법인설립 후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지정(주무부처:해당 17시도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회원 확보

5-12 회원 유지 및 관리

□ 회원 유지 및 홍보

- 지역 내 생활체육 수요계층을 세분화하여 각 수요계층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 제공
 - 연령별 관련 기관(학생-학교/교육청, 유아-어린이집,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회원 확보 권장
- 안정적인 회비 수익 창출을 위해 정회원(월 회비 납부 회원) 확보 노력 필요
 - 준회원(무료회원 또는 수업 당 수익 발생 회원)의 정회원 전환 중요

□ 회원 및 지도자 관리

- 다계층·다연령으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일체감 및 소속감 부여
 - 종목별 간담회, 대회 개최 및 참여, 각종 커뮤니티행사 권장
 - 회원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강조 및 긍정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체육지도자는 클럽 내·외부 지도자 Pool을 적극 활용, 지속적인 교육·평가
 - 체계적인 지도일지 작성과 매니저 검토를 통한 지도자 관리 필요
 - 강습지도안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작업 진행

5-13 스포츠클럽 기금 예산편성 기준 및 사용범위(5년간 6억~9억)

◆ 경영계획 수립 시 기금(6억~9억) 예산편성 기준 및 사용범위

※ 기금에 대한 예산계획 수립 시 '임원'에 대한 ▲급여▲수당▲출장비(일비) 지급은 불가함, 단 출장 실비는 인정됨

구분		연차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중소도시형	20만명 미만	1.5억	1.5억	1억	1억	1억	6억
대도시형	20만명 이상	2.5억	2억	1.5억	1.5억	1.5억	9억

목	세목	편성기준 및 사용범위	비고
인건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1명(월2,500천원/인) - 행정직원 1명(월2,200천원/인) - 회계직원 1명(월2,200천원/인) - 지도자 3~5명(월2,200천원/인) ○ 중소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1명(월2,500천원/인) - 행정직원 1명(월2,200천원/인) - 회계직원 1명(월2,200천원/인) - 지도자 1~3명(월2,200천원/인) ○ 퇴직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으로 기본급만 편성 ○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u>자체예산 및 지방비로 편성</u> ○ 1년차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은 클럽은 퇴직적립금 편성 가능
	일용임금	○ 일용근로자(파트타임 지도자)에 대한 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반 운영비(용품구입,특강 등) ○ 홍보비 및 인쇄물 제작비 ○ 스포츠클럽자체 커뮤니티대회 운영비 ○ 소모성 운동용품 등 구입비 ○ 사무용품 및 클럽하우스 운영비(소모품 등) ○ 비품 수선비(대규모 시설공사 불가) ○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2020기금정산지침 기준 ○ 그외의 것은 자산취득비
	복리 후생비	○ 4대보험	○ 1년차에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은 클럽만 법정부담금 편성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전보험가입 필수 가입*</u> ○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 ○ 기타 공공요금(전기, 전화 등) ○ 대회참가 보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험과 별개로 주최자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에 의거 ○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금 편성 불가
	피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출전 피복비 *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또는 선수반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20만원 이내 ○ 연 5,000천원 이내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임차료(임차 클럽에 한함)* ○ 회원 수송차량 임차료* ○ OA사무기기 렌탈 등 ○ 각종 행사 및 전지훈련 등 장소/차량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임차료> 관련계약서 첨부 <차량임차> 교통여건이 불편한 지역에만 한함 * 단, 리스계약 불가
	차량비	○ 차량 유류비	○ 집행시 차량운행일지 첨부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출장여비(일비,식비,숙박비,운임) ○ 선수반 전지훈련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비 ○ 행사 참가자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 3,000천원 이내 (1인 30,000원 이내 기준)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 책상, 캐비닛,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의자, 단말기 등 사무국·클럽하우스 집기 구입* ○ 운동용 기구 구입 	○ 연간 총 사업비의 10%이내

6 평가방법

6-1 심사 및 평가방법

- 서면(정량·정성) 및 발표평가, 현장실사, 최종선정위원회의 단계로 진행함
- 각 심사과정 중 심사결과에 따라 외부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단체만 시행함 * 60점 미만인 단체는 자동 탈락처리 함
- 또한, 공모평가 중 제출한 서류가 공모요건 미달,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의 심사진행이 어렵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할 경우 탈락처리 됨으로 서류 작성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

구 분	서면 평가(A) (80%)	발표 평가(B) (20%)	현장 실사(C)	→ 최종 선정
배 점	클럽역량(50점) 경영계획(30점)	프리젠테이션(PPT) (클럽운영 경영계획) *서류평가시 보완요청 사항 확인	서류와 발표평가 내용 일치 여부 확인 *발표평가시 보완요청 사항 확인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해당단체는 대한체육회에서 공문 및 유선으로 사전 안내하며 탈락된 단체에는 별도 안내 및 공지 없음

6-2 평가개요

◆ 서면평가(80%)와 발표평가(20%)로 최종 점수 산정

서면평가	클럽역량 평가	▶신청주체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 · 100점 만점 평가지표에 근거한 정량평가 · 최종평가점수의 50% 비중
	경영계획 평가	▶스포츠클럽 경영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가능성 평가 · 100점 만점 평가지표에 근거한 정성평가 · 최종평가점수의 30% 비중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서류평가 시 기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진행 · 발표자 : 클럽 운영 총괄 책임자 · 100점 만점 평가지표에 근거한 정성평가 · 최종평가점수의 20% 비중
	발표시간	▶클럽 Q/A포함 약 30분씩 운영 * 발표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최종선정	최종점수	▶서면평가 점수(80점), 발표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순위 도출
	현장실사	▶ 신청 클럽 중 합산 점수 60점 이상인 단체 를 현장실사를 실시, 제출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클럽은 탈락 조치, 차순위 지원 클럽 선정
	최종선정	▶최종 선정 및 선정 공고

6-3 서면평가(정량평가)

◆ 정량평가-클럽역량 평가계획

역량 평가 주요 포인트		역량 평가 항목 구성	
시설의 안정적 확보 중요	<p>시설확보 없이는 안정적 클럽 운영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운영권을 클럽이 확보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인 클럽 운영 가능 ▶ 스포츠클럽은 일부 시간대가 아닌 주중-주말에 걸쳐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원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 스포츠클럽은 종목시설 외에도 회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클럽하우스 조성방법 등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시설을 중심시설로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 주중, 주말 모두 클럽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 클럽하우스는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가? ▶ 시설의 다양성 확보는 있는가? ▶ 해당 시설을 어떤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가?(소유, 위탁, 임대, 무료 등) ▶ 시설사용 공간 점유율 어떠한가? (전체 활용가능면적 대비 실제 종목 활동에 사용하는 공간비율) ▶ 시설사용계약 기간 및 사용료
클럽 지원 확보 중요	<p>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보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이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 필요 ▶ 특히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운영비 등)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체는 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가? ▶ 외부기관과 연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가? 어떤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는가?(MOU, 구두약속 등)

◆ 클럽역량 평가지표

- 적합한 클럽 시설 확보, 클럽 지원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공모신청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서면평가내용 및 배점(안)					
영역	평가지표	내용		배점	
종목	종목 시설	사용가능시간	종목 운영을 위한 실제 사용 수준		20
		시설점유율	종목 운영 공간 점유율		10
		주말사용여부	주말(토, 일) 클럽 운영여부		10
		시설계약기간	시설사용계약 기간		20
		시설사용료	관리비와 사용료로 구성된 시설사용료		10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조성방법		10	
매칭지원금		매칭지원금 지원 수준		10	
지속지원여부		기금지원종료 후 지속지원 계획 수립 여부 및 매칭지원금외 클럽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		10	
합계				100	

6-4 서면평가(정성평가)

◆ 정성평가-경영계획(제출한 PPT파일) 평가

경영계획 평가 주요 포인트		경영계획 평가항목 구성	
스포츠 클럽의 공공성 확보	<p>클럽 공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및 클럽 운영 강조</p> <p>▶체육소외계층 회원 확보, 지역 커뮤니티프로그램 계획, 클럽 회원 자원봉사 활동 등 중요</p>	클럽사업 이해	<p>▶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지원 단체의 이해가 충분한가?</p> <p>▶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는가?</p>
스포츠 클럽만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 필요	<p>스포츠클럽만의 차별성 확보 방안 필요</p> <p>▶공공체육 시설의 활용률 향상</p> <p>▶클럽하우스 구축을 통한 회원 간 교류 증가 중요</p> <p>▶지역특수성이 반영된 종목 운영</p> <p>▶종목별 자치조직,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p>	생활체육 운영계획	<p>▶종목운영 및 세부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는가?</p> <p>▶자원봉사자 및 클럽 자치조직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p> <p>▶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목 내 계획은 무엇인가?</p>
안정적인 재정 자립 중요	<p>재정자립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강조</p> <p>자금 운영에 대한 계획 속에서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방안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필요</p>	선수반 운영계획	<p>▶선수반 종목 운영계획은 어떠한가?</p> <p>▶선수 확보 및 증원계획은 어떠한가?</p> <p>▶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어떻게 선수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p>
전문 선수 육성 방안 중요	<p>전문선수 육성 및 지원 방안</p> <p>지역사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세부운영계획 및 선수관리방안 확보</p>	재정계획 (Finance)	<p>▶계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p> <p>▶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p>
		클럽경영 계획 (Management)	<p>▶연차별,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은 어떠한가?</p> <p>▶확보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p> <p>▶클럽 홍보계획은 세부적으로 기획하였는가?</p> <p>▶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p>

◆ 경영계획 평가지표

- 클럽의 생활체육 운영, 선수반 운영,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보호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로 스포츠클럽 사업의 전략과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평가

경영계획 평가내용 및 배점

영역	평가지표	내용	배점
사업 이해(15)	지역사회 생활체육 분석	지역 환경 및 생활체육 현황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 지역환경 일반분석(인구 수 등) - 지역 생활체육 현황 분석 - 지역 전문선수 현황 분석 - 스포츠클럽 적용점 도출	10
	클럽 비전 및 목표	클럽 비전과 목표는 스포츠클럽 사업에 적합한가? - 클럽 방향성 도출 - 클럽 비전체계 도출	5
생활체육 운영계획 (30)	종목 운영 계획	종목 별로 어떤 목표와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 종목별 운영 계획(목표인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 종목 회비 - 대회 및 기타 행사 운영 방안 - 5년 이후 종목 운영 방안(종목 확대 등)	10
	지역주민 확보 및 증원계획	클럽 회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증원해 나갈 것인가? - 연도별 회원 목표 - 회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	10
	클럽 자발성	종목별 자치조직 및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자치조직 구성방안 - 자원봉사자 확보 및 운영 방안	5
	이해관계자 및 공공성 관리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클럽 주요 이해관계자 관리 방안 - 공공성 확보 방안(회원 참여 자원봉사 활동, 비회원 대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참여 등)	5
선수반 운영계획 (10)	선수반 종목 운영계획	선수반 운영을 위한 클럽의 계획은 무엇인가? - 선수반 운영 방향성, 연도별 확장 계획 등	5
	선수반 확보 및 증원 계획	선수반 참가자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 연도별 확보 목표 회원 수 - 선수반 참가자 확보 기준 및 방안 - 선수반 역량 향상 방안	5
재정계획 (25)	자금운영 계획	기금 지원을 받는 5년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연도별 자금운영계획	10
	클럽수입 확대 계획	재정자립을 위해 클럽수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 회비수입 확대 방안 - 외부지원금 확보 방안	10
	비용절감 및 재정투명성 계획	어떻게 클럽 비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 클럽 비용 절감계획 - 투명성 확보 계획	5
클럽운영 계획(20)	인력운영 계획	사무국장 및 지도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조직구성 계획 - 지역내 은퇴선수 활용방안	5
	시설운영 계획	시설 및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시설별 현황 및 사용가능 수준 - 편의시설 및 클럽하우스	5
	클럽지원 계획	클럽이 이와 같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는 어떻게 클럽운영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인가? - 신청주체 지원 계획 - 외부기관 협업 계획	10
합계			100

6-5 발표평가

◆ 발표평가 평가 지표

- 기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발표 진행

발표평가내용 및 배점

영역(가중치)	평가지표	내용	배점
사업 이해	클럽 비전 및 목표	클럽 비전과 목표는 스포츠클럽 사업에 적합한가?	10
생활체육 운영계획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30
전문선수반 운영계획	선수 육성 방안	선수반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관리할 것인가?	10
재정계획	재정운영 계획	재정자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30
운영계획	인력/시설 및 지원 계획	클럽 인력/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클럽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20
합계			100

6-6 현장실사

- 서면+발표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단체는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시 확인사항
 - 공모신청서류 및 협약서 내용과 일치여부
 - 체육시설, 클럽하우스, 사무실 등 현장확인
 - 신청단체 및 지자체 등과 면담을 통해 클럽지원 의지 확인
 - 발표평가지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확인 등
- 현장실사단 구성 : 공모심사위원+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현장실사 일정과 보완 요구사항은 별도로 공문으로 안내

현장실사 확인내용

영역	평가지표	내용
체육시설	위치	운영 시설의 선수 및 주민 접근성은 적절한가?(인근학교 및 주거지와 거리)
	적합도	해당 시설이 지역주민 클럽활동을 진행하기에 적합한가?(시설노후, 사용수준 등)
	공간	해당 시설은 생활체육 활동 및 우수선수 육성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크기인가?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클럽하우스	적합도	클럽하우스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회원 접근성, 위치, 사무실 분리여부 등)
	공간	회원 간 교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크기인가?
협약서	일치성	제출한 협약서와 실제 협약서 원본의 내용이 동일한가?
	서류보완	시설사용료 등 제출한 서류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잘 보완되었는가?
지원의향	지자체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가?
	전문단체	본 사업에 대한 체육전문단체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가?

6-7 최종선정위원회

- 공모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공모선정을 위한 절차
- 현장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간의 의견공유 및 논의
- 최종선정은 위원들의 논의 후 위원 전원동의 절차 거친 후 결정
 - *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공모선정이 되는 것이 아님

7

공모선정 공고

- 공모선정 단체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sports.or.kr>)에 안내
 - 공고확인 방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접속→정보알림방→공지사항→담당부서(스포츠클럽부)선택→검색

붙임2 공모선정 후 대한체육회와 체결할 계약서(안)

※ 해당 표준안은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참고용으로 공모선정 후 공모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예정임

<신규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표준계약서>

대한체육회, 지자체, 신청주체(이하 지자체, 신청주체를 통칭하여 ‘지자체 등’), 00스포츠클럽은 00스포츠클럽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00스포츠클럽 간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통해, 00스포츠클럽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한체육회의 의무]

- ① 대한체육회는 00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0000원의 기금을 5년간 지원한다.
- ② 대한체육회는 기금지원을 포함하여 00스포츠클럽의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자체 등의 의무] 지자체 등은 공모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아래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지자체는 00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간 0000원의 매칭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매칭지원금이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1년도 제2차 신규스포츠클럽 공모」 시 지자체가 00스포츠클럽에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이다.

- ③ 지자체 등은 인력 및 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외부기관 지원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④ 대한체육회의 기금지원 종료 후에도, 지자체 등은 00스포츠클럽이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체육사업 위탁운영 등 대한체육회의 각종 사업을 유치, 진행할 경우 제3항에 명시한 것과 동일한 인력 및 시설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지자체는 00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시, 경영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감사 후 공모신청서 및 사업운영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대한체육회에 알리고, 대한체육회의 서면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00스포츠클럽의 법인설립 후, 지자체 등은 00스포츠클럽이 운영주체로서 해당 계약서 상의 내용을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내용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00스포츠클럽의 의무]

- ① 00스포츠클럽은 기 제출된 공모신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00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일체의 요청사항을 즉시 이행한다.
- ③ 00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의 시정조치가 있을 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00스포츠클럽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주체로서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을 승계받는다. 00스포츠클럽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⑤ 00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지원 시설의 변경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체육회 및 지자체 등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평가 및 조치]

- ① 대한체육회는 00스포츠클럽의 운영적정성에 대하여 스포츠클럽 평가를 진행한다.
- ② 대한체육회는 전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지자체 등, 00스포츠 클럽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기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대한체육회는 평가 결과 00스포츠클럽이 공모신청서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그 경중을 판단하여 아래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지원중단
 3. 기 지원 기금 반환
- ④ 지자체 등은 제3조 제4항의 경영감사에 따라 문제를 인지한 경우, 대한체육회에 전항 각호의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위약금] 대한체육회는 본 계약의 각 당사자들이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 불이행한 당사자에게 기 지급된 기금 총액의 100%의 범위에서 위약금 청구 및 공모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은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00스포츠클럽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한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00스포츠클럽의 법인설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를 제외하고,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및 00스포츠클럽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이 계약상의 지위를 계약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기간]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대한체육회의 기금 지원기간인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5조, 제6조는 5년 경과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계약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를 원하는 일방은 계약상대방들에게 서면 통보 후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제5조제3항제3호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기지급된 기금 또는 매칭 지원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1 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모신청서,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공모신청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각 당사자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총 0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기관명	대한체육회
주소	
연락처	
대표자	

기관명	신청주체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기관명	매칭지원금 주체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기관명	스포츠클럽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